
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
[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7719 판결]

【판시사항】

수용대상토지상의 양돈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[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](#)소정의 영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
【판결요지】

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[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](#)소정의 영업폐지사유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, 군 또는 구지역 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, 주택건설사업시행자에 의하여 강제철거된 양돈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그 양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양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인접군 등에 5곳의 영업장소 후보지를 선정하고,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 등이 모두 반려되었으며, 다른 인접군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의 양돈장 설치에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면 [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](#)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【참조조문】

[토지수용법 제51조](#),

[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](#),

[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](#)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상고인】

조길현 소송대리인 흥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운

【피고, 상고인】

중앙토지수용위원회

【피고보조참가인】

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

【원심판결】

서울고등법원 1989.10.10. 선고 87구1503 판결

【주 문】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 유】

1.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.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축산업 및 종축업등록을 필하고 순천시 조례동 1405번지에서 순일종돈장이라는 상호로 양돈사업을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그 사육 규모는 축산업으로서 포유돈 390두, 육성돈 651두, 비육돈 621두, 번식모돈 137두, 후보돈 29두, 종돈 44두와 종돈업으로서 종돈 70두 등 총 합계 1942두에 달한 사실,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위 종돈장 부근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위 종돈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 영업장소로서 순천시 및 그 인접군인 승주군 등 5곳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할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산림훼손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대진정 등으로 위 허가신청등이 모두 반려되어 위 종돈장을 이전할 수 없게 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위 양돈장영업시설이 강제철거되는 등의 사태에 이르자 사육하고 있던 비육돈 및 종돈을 모두 비육돈의 가격으로 염가방매처분하고 위 축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기에 이른 사실, 위 종돈장이 소재하고 있는 순천시 및 그 인접군인 승주군, 광양군, 여천군에 있어서도 원고가 경영하던 위 종돈장 규모의 양돈장 설치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는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. 논지는 이유없다.

2.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.

[토지수용법 제51조](#)에 의하면, 토지의 수용 등에 의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, [동법 제57조의2](#)에 의하여 준용되는 [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](#) 및 이를 이어받은 [동법시행규칙 제24조, 제25조](#)에 의하면, [토지수용법 제51조](#)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상의 손실은 결국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나누어지고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[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](#)에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,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,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확정된 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영업장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위 규칙 소정의 "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"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.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, 원고가 경영하던 이 사건 순일종돈장은 축산업, 종축업 모두가 도지사에 대한 등록대상업체이었고, 축산업은 모돈 500두 이상의 경우에만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대상사업인바([축산업 제13조의2, 같은법시행규칙 20조의2](#)참조),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당시 모돈 500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영업허가 대상업체가 아니고 등록대상업체에 불과한 원고의 위 종돈장에 관하여 위 허가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. 그러나 한편,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, 군 또는 구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영업폐지사유로 규정되어 있고, 여기에는 영업장소에 인접하고 있는 시, 또는 구지역안에서의 특수사정으로 사실상 영업소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, 원심이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순일종돈장의 경우는 그 인접군에 있어서도 실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음을 알 수있으니 이는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잘못이 있더라도 위 양돈장의 경우가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

법리오해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